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7.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7.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행복나눔과장)
- 제출일자: 2024. 7. 5.(금)
- 회부일자: 2024. 7. 5.(금)
- 검토기간: 2024. 7. 8.(월) ~ 2024. 7. 12.(금)

2. 제안이유

- 달서구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달서구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면적	이전일 (최초개원)	직원수	현 위탁사항	
					위탁기간	수탁기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진천로9길 33 진천동 복합청사 4층	346.44m ²	2014. 8. 4 (1998. 7. 16)	9명	2022. 1. 1. ~ 2024. 12. 31 (3년)	전석복지재단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4. 관련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7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달서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계약기간(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이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위탁업체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도록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르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진천동행정복지센터 4층에 위치한 자원봉사센터는 비상근 센터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 6억 3,707만원(구비 5억 5,933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현재 교육사업, 홍보사업 외에 달서구자원봉사특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자율성에 대한 적정 의견과 민간위탁이 전문인력확보 및 현장수요 반영이 쉽다는 검토의견을 고려할 때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구분	2021.12	2022.12	2023.12	2024.6	비고
등록인원	178,185	183,780	190,094	193,126	
봉사시간	583,286	648,719	853,836	414,352*	

* 2024년 6월말 등록된 봉사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은 봉사시간이 있음.

** 2023년과 2021년 비교하면 2년 간 등록인원 11,909명, 봉사시간 270,550시간 증가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⑦ <생략>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